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424
----------	-------

발의연월일 : 2025. 11. 20.

발 의 자 : 김원이 · 이해식 · 김남근
박상혁 · 신영대 · 박홍배
한준호 · 안호영 · 박용갑
허종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산업융합 분야와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는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산업 생태계 안정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산업융합 관련 정책과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와 소재·부품·장비 관련 수급안정 및 생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은 바,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산업정책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4항제2호”를 “제4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제8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와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공동으로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2항제10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간사가 된다.	④ ----- ----- ----- ----- ----- ----- ----- ----- ----- -----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u>제4항제2호</u> 에 따라 위촉한	⑦ <u>제4항제2호 및 제3호</u>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⑧ ~ ⑪ (생략)	-----.
	⑧ ~ ⑪ (현행과 같음)